

# 교회법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통권 제26호

학술논문 / 일반

[www.churchlaw.co.kr](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mailto:law134@naver.com) (031) 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월간

## 교회법

통권 26호

발행인 : 소재열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등록 : 김포,라00029

인쇄인 : 한명훈

발행일 : 2023. 12. 15.

주소 :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아침 1208)

전화 : (03) 984-9134



- 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 최종천 목사, 소재열 목사
-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시 어느 법이 우선인가?
- 교회 채무, 교인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교회 본질이 지켜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역을 위해 마중물이 되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습니다.

· 제목 : 2024년도 선교비(연구소) 지원 요청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리폼드뉴스와 한국교회법연구소는 지난 15년 동안 한국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전국 교회를 위해 교회법 연구와 세미나 및 상담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상담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저희 연구소에 선교비(연구사역) 지원을 해주시면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단체 등록번호 : 119-82-83446

월간 「교회법」 (등록: 김포, 라00029)

홈페이지에서 열람 <http://churchlaw.co.kr>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법학박사)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베네치아아침 1208)

## 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9년 전 'CBS 크리스천NOW 제74회' 토론중에서

최종천 목사, 소재열 목사 발언록

9년 전에 'CBS 크리스천NOW 제74회' 에서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MC는 김응교 교수(숙명여대)였으며, 패널은 최종천 담임 목사(분당중앙교회), 소재열 소장(한국교회법연구소), 오세택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강문대 변호사(강문대 법률사무소) 등이었다. 이에 '크리스천NOW' 에서 교회 정관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패널들과 함께 '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이라는 방송 토론을 마련했는데 최종천 목사와 소재열 목사, 그리고 오세택 목사와 강문대 변호사가 각각 정관 성격과 견해를 밝혔다. 여기 최종천 목사와 소재열 목사의 발언을 녹취하여 정리했다.

### 최종천 목사 발언록



**분** 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1년 초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아니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며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13개월 만에 교회를 건축해서 23개월이 되었을 때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입당하셔서 이제까지 23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고 교회 예배당 건축할 만한 약 200억 원 정도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인물을 양성하자 생각하고 이제까지 저희가 구제 선교 및 인물 양성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약 5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고, 또 얼마 전에 사회 기부를 약 150억 정도 되는 교회 토지를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역시 원하건 원치 않았건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임목사의 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쟁이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32개 항목 그리고 3천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은 방대한 분량의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소명해 내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청, 고검 그리고 재정신청까지 걸쳐서 모든 내용의 무혐의 불기소 처리로 모든 종결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약 1년에 970곳을 도울 수 있었고, 또 구제 선교,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50억이 넘는 장학금을 지출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중단해야 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제 다시 교회가 기도하며 그 일의 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정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 어려움의 과정에서 세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적법이고, 둘째는 절차의 정당성이고, 세 번째는 그 내용의 공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적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동안 미미하지만 정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각 위원회 별로 기준과 지침, 모든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결재를 만들어서 지출 근거를 분명히 해서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준이 되는 정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적인 시행 세칙, 각종 전결 규정 및 규정, 그리고 위원회 지침 기준 등을 완벽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일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 가운데 정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면 누구나 그 법의 매임으로 지켜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담임 목

사도 법을 지켜야 하고, 장로도 법을 지켜야 하고, 성도도 법을 지켜야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건 분쟁이 일어나건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 된다면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고 또 분쟁이 있을 때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 정관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리고 아까 우리 오 목사님께서 그 이 정관을 제정하는 게 목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 들으셨는데 혹시 저희 교회 정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정관 및 각종 시행세칙 규정 기준과 지침이 있는 저희 법규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교회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임전결 규정을 통해서 담임 목사는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일은 제교회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완결하는 체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사회도 통치의 시대를 넘어서 법치의 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모든 교인들의 성경적인 또 특별히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서 그 교단 헌법에 준해서 원칙을 만들고 목사도 그 원칙을 메이고 또 지침으로 자유로워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 교회가 보다 더 원활하고 어려울 때도 같이 책임지고 또 같이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자는 데에 관점을 둔 것이죠.

**저**

희 교회는 그 예산을 확보할 당시부터 세부 예산을 짜고 예산이 없는 것은 절

대 지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산 자체가 통과되면 통과된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결산 전에는 또 원하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예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도 그렇게 고소를 해서 결국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우** 리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내용대로 정관 개정이 왜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정관 제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각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죠. 우리 장로교는 교인의 대표로 장로를 뽑았던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대의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제 말하자면 권력의 분산과 책임의 분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관을 제정한 건데 저는 투명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까발려야 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모든 사항을 공지함으로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예산으로 따지자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까지 적법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거쳐서 그리고 모두에게 공지된 사항에서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는 저희 교회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한 2년여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교회는 쑥밭이 돼 버렸어요. 모든 상황은 끝나버린 상황에서 무너진 성을 다시 메꾸는 또 세우는 이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이제 회생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교회 분쟁의 방지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 최소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침이 짝혀지는 것은 마치 재정장부 못 본다 그것이 무슨 최선인 것 최대의 이슈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은 사실은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투명하게 적법과 절차와 공개에 걸쳐서 깨끗하게 진행하고 목사는 지도 감독의 권한 그다음에 제직회에 속한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일에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에 대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공동의회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결산 승인하고 하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엽적인 한 가지 문제가 전체인 것처럼 해서 전체를 폄하하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추구했던 바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즘은 교회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 머리를 숙이고 사회에 우리 교회를 결정해 달라고 고소를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여건도 안 되니까 교회의 모든 일을 사회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이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 규약이고 그 정관이 제정될 때에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맞추고 힘을 맞

추고 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모든 교단과 교리에 맞춰서 모든 일이 진행돼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적법과 절차와 공지에 의해서 책임과 권한이 분산돼서 이루어지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의 양들을 구했듯이 우리는 이 지상에서 혹시라도 교회를 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릇된 일이 있다면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책임과 권한의 분산 그리고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재열 목사 발언록



**교** 회 정관이 왜 중요한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위해서 성경과 원 교리를 유지하고 계승시키기 위한 규범들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교회 정관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헌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교회 정관은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분쟁 시 사법심사를 요청했을 때 법원은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판단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이 정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다섯 번째, 교회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에 교회 정관이 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 방 간 이의 없는 내용들은 정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쌍방 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개인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정관을 새로 만들거나 재정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관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이유에 있지 않고 지금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해보면서 많은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상담을 해보게 되면, 정관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그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관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해왔습니다. 법률행위를 해왔던 그 정관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세택 목사님께서 교회 정관이 없다고 했는데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등기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해서 교회 명칭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법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법률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불법적 정보가 지고는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합리적인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정관을 제정하자 개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는 것입니다.

**지** 금 그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교인의 그 권리 주장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장로교 교회의 독특한 교리와 신학적 입장에 근거한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교인이라고 하면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재정결산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본인이 참석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또 재정장부를 또 열람하자 그것은 신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치 법규로 규정화시켜서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합의하여 재정 결산 승인된 재정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부 열람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 제정은 그 자율성에 근거한 교인들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가장 좋은 정관의 근거로서 교인들의 그 요청, 원하는 방향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정관이라고 해서 교회 정관을 '정의관념에 반 한다' 라고 하는 그 주장. 정의관념에 반했을 경우 법원에서 이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교회 정관은 철저하게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적 입장이 있을 것이고 교리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의 교리적 신학적 입장, 정치 제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하에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정관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민주적 정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관 성격적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어떤 우리 정관 내용들이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성경의 원리에서 인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인출된 정관을 만들 때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정관이 아니고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정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신교 장로교회가 가톨릭교회의 교회 정관을 향하여 당신들 그 정관이 '정의 관념에 반 한다', '효력이 없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정치 이념 원리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교회 정관도 우리 개신교 여타 다른 교단에서 구세군 교회의 정관을 민주적이지 못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구세군의 독특한 정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 교회는 다양한 정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확일적으로 모범 정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우리 오 목사님께서서는 당 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의 방식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의 공포권이 없으면 결의되지 않는다.'는 정관의 문제점을 주장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고신 측 장로교이지 않습니까? 고신 측이나 우리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은 공히 장로교 정치 제도가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와 서로 견제를 이룬 겁니다.

권력이 장로들에게 집중되면 회중 정치가 되고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 감독 정치, 교황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장로 정치는 이 두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들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성직권을 갖고 있는 당회장은 가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결의가 된 겁니다.

목사가 결정하고 싶어도 장로들이 찬성해 주지 아니하면 결의되지 못합니다. 장로들이 결정하고 싶어도 목사가 가부를 묻지 아니하면 결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견제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신 측도 그 원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의 신학적 입장 그 교리적 입장 정치 제도를 좀 더 이해를 하셔야 그 부분이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당회장인 담임목사의 한 표가 장로 한 사람의 투표권과 같은 권한이라는 말은 목사와 장로가 구별이 없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고요.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의 장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성직권은 무너집니다. 다수 장로들의 뜻대로 결의될 수밖에 없어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장로회 정치 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무너지 저릅니다.

**이** 제 근래에 교회에서 개정된 정관 내용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쪽에서 나온 모범 정관을 제가 봤습니다. 모범 정관을 봤는데 민주적 정관이라는 이름 하에 제기된, 제공된 모범 정관을 봤는데 그 모범 정관은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위를 원인으로 해서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단을 탈퇴하고 모든 권력을 교인들에게 집중시키는 정관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치리권, 징계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교인들이 갖는 겁니다. 성직권에 대한 임명권, 담임목사의 해임권까지 공동의 교인들에게 결정하겠다는 것이 모범정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 하에 보면 교회 권력 구조는 입법·사법·행정이 있습니다. 그 입법사법행정이 있는데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고 행정사법권은 당회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임면권은 노회가 갖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인데, 우리 교단의 장로교 헌법인데 이 헌법이 부정되지

않는 한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민주적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님의 징계권, 교인의 징계권을 교인들이 갖습니까? 교인들이 갖는 그 정관은 회중 정치 소위 말해서 침례교회 정치 제도의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을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시면서 모범 정관을 제시했는데, 그 모범 정관, 그 모범 정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전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철저하게 어떤 주관적 교인들의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교단 헌법과 그 교회가 소속돼 있는 교단의 신학적, 교리적, 정치 원리하에서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관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로교 정치 제도는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치리해 나갑니다. 이걸 당회의 권한으로 나타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장로교의 정치 제도 자체가 바로 이런 공동의회와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제직회 직무를 제외한 그리고 담임목사의 목회권, 교리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결정들이 당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관으로 명시하는 것을 악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정관에 대한 최종천 목사와 소재열 목사의 발언록은 9년 전의 상황이다. 9년이 지난 지금 교회 정관법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귀한 자료이다. 지금 교회 정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은 대부분 교회 정관과 관련한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시 어느 법이 우선인가?

면직 처분받은 담임목사의 공동의회 소집권 특례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 목 차

### 1. 서론

### 2.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의 관계

- 1) 정관 제정이 변경으로 해석된 사례
- 2) 지교회 면직받은 목사 대표자 지위 상실
- 3) 교회 정관 특례규정, 면직목사 대표권 문제

### 3. 사례분석

- 1) 교회에 새롭게 적용된 법리
- 2) 목사면직, 여전히 대표자 지위 유지 법리

3) 대법원, 교단탈퇴 극적으로 무효 확정

4) 교회 분쟁 종식되다

5) 대법원 확정판결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 4.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시 문제

- 1) 사례
- 2) 법원의 판례 법리

### 5. 평가 - 결론을 대신하며

### 〈요약〉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한다. 그 분쟁은 인적 단체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분쟁은 교회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운영의 주체인 교인들에 의한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자율적인 운영규정의 원칙은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교단헌법을 중심으로 가장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운영원칙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일이다. 지교회가 해당 교단에 소속되어 교단헌법을 지교회 자치규정으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과 충돌될 경우가 있다. 물론 교회 정관은 교단헌법에 충돌되지 않게 제정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교단헌법과 달리, 특례규정을 두어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교회가 늘고 있다. 이는 교단의 정치 교권을 믿지 못한 불신이 그 내면에 자립잡고 있다. 교단의 지나친 개입으로 교회가 혼란이 찾아올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법원의 소송 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 정관으로 이러한 분쟁의 원인 해결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법원으로 갔을 때 교회 정관대로 판단한 법원의 판례는 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강제 수단이 된다. 본 논문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법리에 관한 고찰이다. 교회 정관에 엄격한 특례조항을 두었을 때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교회와 운영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 (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민법), 현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사랑 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개정위원이며, 칼빈대학교 겸임교수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법을 강의한 바 있다. 저서로 『합리적인 당회운영』, 『장로교 신학적 전통』, 『교회 정관법 총칙』 『장로회 헌법 정치 해설』,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신비의계시 로마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외 다수가 있다.

## 1. 서론

교회의 분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 분쟁은 2천 년 전 고린도교회 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이해에 대한 결핍과 잘못된 실천적 행위로 말미암는다. 분쟁의 양 당사자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적법하고 상대방은 불법이라고 한다. 판단의 근거에 대한 법적 조문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특정한 조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입법화한다면 교회는 해당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쟁 판단은 달라진다. 문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한다면 끝없는 논쟁과 분쟁이 교회의 본질을 파괴할 수 있다. 인간의 타락한 주관적 견해, 자기주장의 절대화를 주장하며 상대를 죽이는 것이 곧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비정한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가 섬김과 봉사,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함몰시키고 있다.

교회는 특정한 교단에 가입한다면 그 조건은 소속 교단의 헌법을 지교회의 자치 규범에 준한 운영원리로 삼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지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는 상하 주종관계가 아닌 유기적 통일성에 의한 교회 본질 형성과 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교단의 교권으로 소속 지교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적인 갑질의 형태는 교단과 교회의 어두운 부분이다. 반대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의 정치적 원리와 교리적인 입장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운영으로 교단과 갈등을 일으킨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에서 교단은 소속 지교회를 지도 감독이라는 미명아래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지교회는 소속

교단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여 소속 교단과 늘 갈등 관계로 노출되기도 한다.

지교회 법률행위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된다는 것은 재산의 대표자, 모든 종교의식을 집례하고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당회, 제직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와 당회, 제직회 소집은 그 자치가 하자가 된다. 이를 ‘소집 절차’의 하자라고 한다. 소집 절차가 하자이면 공동의회와 당회, 제직회에서 그 어떤 결의를 할지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무효가 된다.

이런 법리판단에 따라 교단이 지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담임목사를 면직하거나 정직시켜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 내지는 중지시킨다. 대신 노회가 지교회와 의논 없이 직권으로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이는 지극히 교단 헌법상 운영의 적법절차이다. 이런 경우, 지교회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청빙한 담임목사를 잃게 되고 대신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에 의해 모든 대표권이 행사된다. 교인들은 임시 당회장의 권한에 저항할 수 있는 길은 교단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소속 교단이나 임시 당회장의 교권은 지교회의 자치적 운영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받는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교회의 자율적인 운영의 길은 없는가? 이와 관련하여 지교회가 어떻게 정관변경을 통해 대항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러나 교회 기득권 측이 자신의 교권을 보호하고 장악하기 위해 교회 정관에 교단 헌법과 충돌되게 재정 변경하면 안 된다. 오직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 2.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의 관계

### 1) 정관 제정이 아닌 변경으로 해석된 사례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은 지교회의 자치 규범이 된다. 특정 교단 가입은 교단 헌법을 지교회 자치 규범에 준하여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이 반영된다. 따라서 지교회 정관이 없는 경우, 교단 헌법은 지교회 자율적 운영의 규범 원리로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정관이 없거나 모호할 경우, 새롭게 정관을 제정할 때 이를 ‘정관변경’ 법리로 판단한다. 이 유권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제정과 변경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관 제정’으로 판단하여 정비한 정관이 ‘변경 법리’에 의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관이 없거나 정관을 다시 만들 때 이를 무조건 정관변경 법리에 따라 훗날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 2) 지교회 면직 받은 목사 대표자 지위 상실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을 경우, 지교회 대표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면직 받은 목사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 탈퇴 등의 결의를 할 때 이는 무효 사유가 된다. 왜냐하면 면직을 받아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아님에도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이다. 교단이 면직을 처분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그 임시 당회장이 임시 대표자 지위를 갖게 된다. 임시 당회장에 의해서 소집되지 않는 공동의회는 소집 절차 하자로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담임목사를 소속 노회가 면직하므로 대표자

의 지위를 변경하여 교회 분쟁이 심화하는 경우가 있다.

### 3) 교회 정관의 특례규정, 면직 목사 대표권 문제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교단) 목사직 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그 목사는 해당 교회 대표직이 상실된다. 대표직이 상실된 상태에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그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정관 규정을 둔 교회라면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면직된 목사는 해당 지교회의 대표권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할 때 이는 적법성이 인정된다.

간혹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 교회 정관에는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19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 교단 헌법에는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개체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교회 내부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므로 헌법대로 정관을 개정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교회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 3. 사례분석

전남 광주 소재 광주시민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분쟁이 종식되어 평온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을 찾기까지 오랜 기간 힘든 나날을 보냈다.

#### 1) 교회에 새롭게 적용된 법리

분쟁의 시작은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담임목사의 무리한 목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 광주시민교회 당회원들의 평가다. 광주시민교회 분쟁과 그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 이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분쟁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분쟁은 관련 교회법과 국가법 사이의 틈새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광주시민교회 전 담임목사는 아직 정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정관에 투영하고자 하는 데부터 시작되었다.

“교단 헌법은 본 정관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인정하되, 본 교회의 독립성과 본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 담임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문제가 될 때 이 정관은 문제가 된다. 담임목사와 당회원 간의 갈등으로 전 담임목사는 노회에 피소되어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소속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종전의 정관을 변경했다. 그러나 정관상 담임목사가 면직처분을 받을지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여전히 담임목사의 대표권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위한 소집권자의 하자 문제로 법원에 의해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효력이 정지되어 버렸다.

#### 2) 목사면직, 여전히 대표자 지위 유지 법리

소속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을지라도 교회 정관에 의해 대표권 지위가 유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전 담임목사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여 군소 교단에 가입해 버렸다. 그러나 가입한 그 교단에서 전 담임목사는 면직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전 담임목사를 반대한 당회원과 교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군소 교단에 가입해 버리자 이제 군소 교단에서 담임인 당회장을 파송해 버렸다. 교회 사업자 변호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군소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로 변경되고 말았다. 이제 교회를 고스란히 빼앗길 처지가 되었다.

전 담임목사의 교단 탈퇴가 무효되면 새로운 군소 교단 가입은 무효가 되고 그 교단에서 파송한 담임목사는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교단 탈퇴가 적법하면 군소 교단 가입도 적법하게 된다. 교회 대표자도 군소 교단 소속 목사가 인정될 뿐이다.

### 3) 대법원, 교단 탈퇴 극적으로 무효 확정

이제 전 담임목사의 소집권자로 하여 진행된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무효화시키지 아니하면 광주시민교회 예배당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적법성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쟁점이 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당시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교회 정관 문제였다. “본회 회원의 과반수”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단 탈퇴 정족수는 적법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판단이었다.

둘째, 정관에 규정된 공동의회를 위한 당회 결의가 없었다. 셋째, 회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 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첫 번째 문제는 패소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인정되어 교단 탈퇴가 무효되어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 교회가 양측 분쟁으로 별도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당회 결의와 소집통지가 문제가 발생하여 교단 탈퇴가 무효되었다.

### 4) 교회 분쟁 종식되다

현 담임인 김용수 목사는 교단 탈퇴 소송이 진행될 때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며 교인들을 하나로 결집하며 아픔과 갈등을 치유해 나갔다. 만약에 교단 탈퇴가 적법할 경우, 교단 탈퇴를 거부한 교인들과 현 예배당에서 떠나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왔으니 그 마음고생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 절차 하자 문제로 무효되자 교회 예배당을 지킬 수 있었다.

김 목사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교회에, 목회자로 인해 불신으로 가득한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임하여 사역을 진행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재판인 줄 모르고 부임해 왔다.”라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사역해 왔다”라고 했다. 또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제 지나고 나니 보람도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교인들과 생사고락을 하기로 결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분쟁의 한 가운데 교회 사무실에서 사역을 감당한 부목사인 백치욱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했다. 교회 내에서 “모든 행정과 교인들과 소통하며 교회를 지켜야 한다,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기도가 오늘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된 힘이였다.”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교단 탈퇴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박성구 장로는 “교회는 법원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아예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심사숙고하게 규정들을 잘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5) 대법원 확정판결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대법원판결 후 등기소와 세무서의 고유번호증이 현 담임목사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모든 행정 서류가 정상화되었다. 광주시민교회의 분쟁은 전 담임목사의 교회 정관변경을 통해 소속 노회에서 면직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대표자 지위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 규정도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신법치주의가 등장했다. 이 문제는 교회와 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연동된 문제이다.

면직 받은 목사가 지교회 교인들을 선동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회의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 여기에 자신도 교단을 탈퇴한다.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과 무관한 독자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교단을 탈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회 정관 내용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 4.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시 문제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이에 대한 법리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법이 우선인가에 대한 우선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성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1) 사례

첫째, 교단 헌법은 항존직은 만 70세까지(합동), 혹은 만 70세 연말까지(통합)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 정관은 달리 규정하기를 만 65세까지 혹은 7년이 경과하면 사임한다는 등의

규정을 둔다.

둘째, 교단 헌법에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 입교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교회 정관은 만 19세 이상 이상으로 한다는 등으로 규정한다.

셋째,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당회장(혹은 임시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상 규정이다. 이때 당회장이나 임시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그만이다. 교인들이 임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할 때이다.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당회장(혹은 임시 당회장)에게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2주간 이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소집 청원자 대표가 직권으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 정관 규정은 교단 헌법에 반드시 공동의회는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헌법 규정과 충돌된다.

넷째,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이나 징직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교회 대표권이 상실 내지는 정지되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회 정관에 특례조항으로 규정할 때가 있다.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시벌 내지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소속 교단으로부터 담임목사 면직은 지교회 대표권 상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관의 특

례조항이 있다면 공동의회를 통하여 대표권이 상실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대표권이 유지되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교단 헌법이 우선인가, 교회 정관이 우선인가? 교단 헌법이 우선이라면 지교회 대표권이 상실되어 공동의회 소집권이 상실된다. 하지만 교회 정관이 우선이라면 노회가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지라도 해당 교회 대표권과 공동의회 소집권은 임시 당회장이 아닌 면직 받은 목사가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교회 정관의 특례조항이 종국적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에 국가 사법기관, 즉 법원의 판례법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판결은 강제력을 갖고 있다.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러한 판례로 교회가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바른 법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실수를 방지하는 것과 실수 후에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교회 운영을 위한 자치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2) 법원의 판례 법리

대한민국 법원은 이럴 때, 어떠한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시 분쟁을 해결하는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법리를 적용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

**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sup>1)</sup>**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단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판례법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회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법리로 적용되고 있다. 전국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분쟁을 판단하여 판결한다. 교회가 자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교단)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자체 규정으로 유효하다. 즉 교회 정관으로 교회 운영의 규칙을 제정하는 권리는 대법원이 중요 조건으로 제시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 때문이다.

첫째, 교회는 교단에 소속한 지교회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와 내부적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둘째, 교단 헌법 제2편 제2조(통합, 합동은 정치편 제1장 2조)에서도 지교회가 교회의 정치조

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정치 편은 교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지교회 자치에 맡길 영역이며, 지교회에서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교단 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단에서 이에 반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한편 교단 총회의 헌법 해석위원회가 교단 헌법과 충돌된 교회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지라도 이는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이러한 총회 헌법 해석위원회의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주장 역시 배척된다.<sup>2)</sup>

## 5. 평가-결론을 대신하며

지교회의 소속 교단 가입과 그 관계는 서로 합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법적으로 계약 관계’이다. 이는 쌍방의 합의가 파기될 경우, 가입이 철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단의 지나친 개입이 있을 경우, 지교회는 가입에 따른 합의를 파기하는 ‘교단 탈퇴’를 결의할 수 있다. 반대로 교단은 ‘가입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교단의 가입 철회나 지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는 상대방 측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직권으로 인한 자기결정에 해당한다.

지교회가 해당 교단에 가입하여 교단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단 헌법이 지교회 정관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또한 교단이 강제적으로 교단 헌

법과 충돌된 지교회 정관을 개정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이는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에 충돌되게 제정 및 변경했다는 이유로 제재하거나 징계(시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헌법에 따라 각 법령에 따른 강행규정으로써 독립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한 상태에서 교단 헌법과 반한 교회 정관 규정을 둘 경우, 교단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다수 교인의 성향에 따라 분쟁이 종식되고 만다.

예컨대, 교회 정관에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시벌 내지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지라도 다수의 교인이 법원에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비송사건절차법을 진행하여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하는 결의를 해 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다수 교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쪽도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분쟁은 계속된다. 이런 이유로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정관에 담임목사 해임에 관한 규정을 출석회원 과반수로 해 버린다(비송사건절차법으로 광주 화성교회(통합) 정관 제정 사례).

교회 정관 규정은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규칙이 다를 수 있다. 교인들이 교단 헌법에 따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 변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004(2017. 4. 20. 소송종료선언), 대법원 2017다232136(2019. 11. 28.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892(2020. 11. 27. 각하판결) 등 참조.

## 교회 채무, 교인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 교회 준총유 재산에 대한 법리 이해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재정 집행에 대해 결산을 하게 된다. 결산 때 교회 채무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 채무가 많다고 보고하면 은혜가 안 되고 새 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 운영의 문제가 제기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 교회 채무 문제

재정 집행 승인 과정에서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황에 관해 보고한다. 보고도 전체 채무액의 규모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자율이 몇 퍼센트이며 매월 이자 상황과 연이자 상황이 얼마인지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묻는 사람은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낙인이 찍힌다.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똑똑한 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가 합리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국가나 단체, 심지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가정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남의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상환 능력을 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무책임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

교회 역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 대출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교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등 아주 특별한 때에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임에도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다. 현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대출을 받아 우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 그리고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교인들은 교회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 법인격 없는 총유의 소유관계

우리의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는 교회는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한다고 본다. 비법인 사단은 총유라는 공동소유 형태의 개념을 갖고 있다. 총유 제도에 대해 흔히 관리·처분과 사용·수익권으로 구분하여 관리·처분권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며(해당 정관에 정족수 규정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사용·수익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있다고 설명한다(교인 지위가 상실되면 사용·수익권 상실). 또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의 하나라고 하여 사원(교인)의 총의(전체의 뜻)에 의한다고 설명한다(당회에 위임할 수 있음).

### 총유 재산의 책임과 채무

법인 아닌 사단(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지는 채무는 사단의 재산인 총유 재산에 의하여만 책임을 지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교인)은 회비 기타 부담금 외에 개인 재산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278조가 말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가운데에는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며,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채무는 총 사원의 준총유라는 것이 통설이다. 통설에 의하면 사단의 사원(교인)은 비법인 사단의 법리에 의하여 교회 채무에 대한 교인의 책임은 교회 재산(사단 재단)에 국한한다. 교회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교회 재산뿐이며, 교인인 소정의 회비 기타 부담금(각종 헌금) 지급 외에 교인의 개인 재산으로써 책임은 없다.

교회 헌금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아니고 신앙 행위이며, 신앙 행위는 법률관계가 아닌 신앙의 관계이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에 대하여 헌금 기타 부담금 지급행위의 청구권이 없다. 간혹 헌금을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납부한 회비를 돌려달라는 청구권은 없다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교회 정관에 분명히 해 두는 것도 지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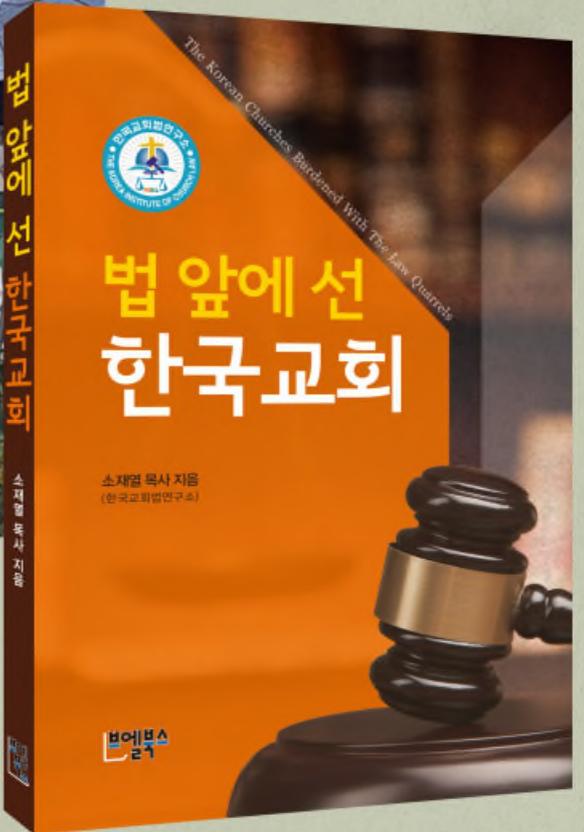
### 채무(담보제공), 정관 규정 정비 필요

법인격 없는 사단, 즉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교회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에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준한 자치 법규로 인정된 교단 헌법이다.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러므로 정관에 재산 관계 규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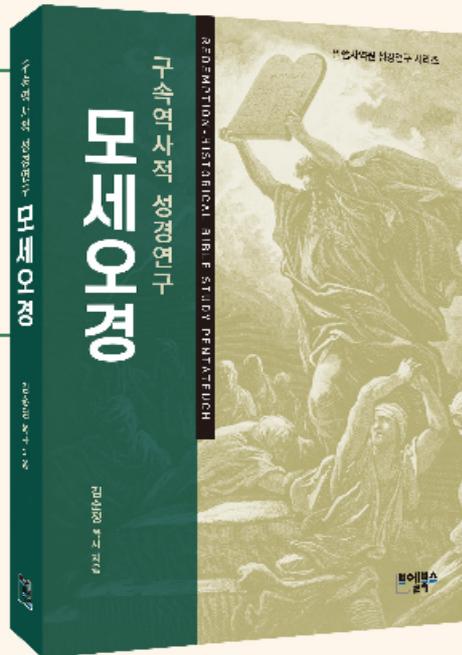
교회의 채무 발생은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므로 발생한다. 금융권은 교회 재산에 관한 법률적 이해하고 있으므로 교회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에 적정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해 준다. 금융권에서는 대출해 줄 때 반드시 해당 교회 정관을 요구한다. 정관을 요구하면서 그 정관이 해당 교회의 적법한 정관임을 입증하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요구한다. 요즘 대법원은 입증력은 회의록이며, 정관 자체는 공동의회 전권사항이기 때문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정관 제정이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교회 정관 규정은 담보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교회 정관에 부동산 담보제공의 권한이 첫째, 공동의회 결의인가? 둘째, 당회에 위임하여 당회 직무로 되어 있는가? 셋째, 당회에 위임되어 있을 때 유한 위임인가, 아니면 무한위임인가?

정관상 담보제공으로 대출받는 한도를 제한하여 당회 직무로 할 경우,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 그 이상의 대출은 공동의회 결의해야 하도록 정관을 규정하면 좋을 것이다. 교회 부동산으로만 책임지는 대출은 교인과 당회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한 대출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교회 정관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 신간 안내



김순정 목사 지음 / 신국판, 352쪽 정가 18,000원

책 구입 문의(세미나 강사 문의) : 010-2838-5944  
통신으로만 보급합니다

## 본서 활용도

1. 본서는 모세오경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구속역사적 관점에서 체계화 했다.
2. 신자라면 누구든지 본서를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다.
3. 교회에서 성경공부 교재로 활용하면 매우 유익하다.
4. 성경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성경공부 교재이다.



목사 신분의 변호사

# 교회의 아픔을 함께하며 변호합니다.

김대준 변호사의 약속

하나, 현직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하나, 교회 분쟁 사건은 교회  
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 교회 문제로 많은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 교회를 지키고 구성원  
의 권리를 중요시 합니다.



변호사

김대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7층 (서초동, 엘렌타워)

T 02-3477-3002 / F 02-3477-4530, 핸드폰 010-5624-4530

999kdj@hanmail.net

| 삶의 기쁨과 희망 주는 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교회**  
YEJUNG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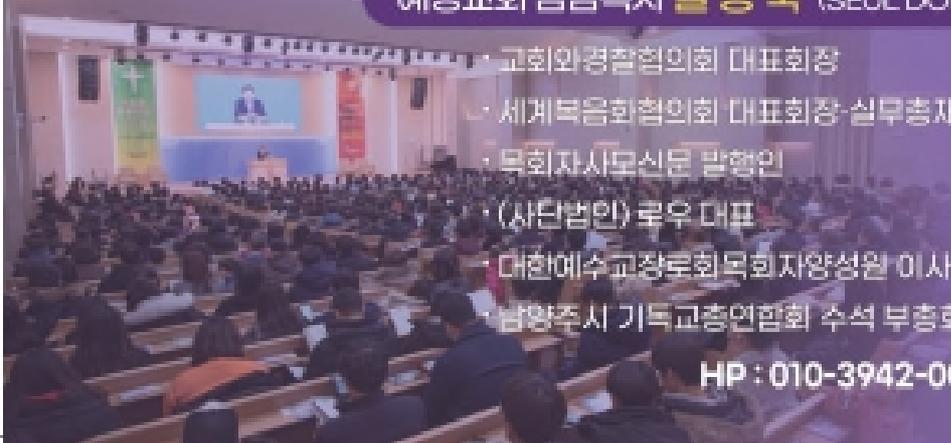
교회창립 1988. 10. 22



예정교회 담임목사 **설동욱** (SEUL DONG WOOK)

- 교회와경찰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실무총재
-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 (사단법인) 루우 대표
- 대한예수교장로회목회자양성원 이사장
- 남양주시 기독교총연합회 수석 부총회장

HP : 010-3942-0002





# 사랑하며 섬기는 새에덴교회

**다시 본질로!**  
Back to **Essence** Again!

**다시 생명으로!**  
Back to **Life** Again!

**다시 사명으로!**  
Back to **Mission** Again!



담임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대표적인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입니다.”

소강석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마틴루터킹 국제 평화상을 수상하고 한국 목회자 최초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록에 등재되었으며,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목회자요, 현대적 지성과 예술적 감성, 광야의 영성을 겸비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복음의 사회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교회 생태계와 건강한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에덴교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TEL 031-896-1000 [www.saeeden.kr](http://www.saeeden.kr)





#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상계성전



공릉성전

주제 : 다음세대를 세우며  
노약자를 섬기는 교회

표어 :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합 3:2)

담임목사 | 김 종 준  
동사목사 | 임 광

협동목사 문웅식(총신대 교수) 황선우(총신대 교수)

부 록 사 서영민 고영복 노만설 김웅식 장상원 김명철 박호수 정영우  
곽성중 이연식 오신영 정진정 박경원 권아진 강동근 황성구  
서정도 안민호 최동훈 강주민 김경호

영어담당 Naveed Karamat

협동목사 박 년 민병남 정성봉 한석조 이성기 김영일 김영호 한도영  
전 도 사 박현숙 김형순 한난초 백옥남 윤원정 이미영 이복순 최현숙  
권하은 김연희 김영선 이규금

명예전도사 김혜순

협동전도사 김현예 백미자 송영숙 장금순 김시은 이규숙 안순연 홍연임  
김순애 박월순 손정숙 김명옥 이지애 김경희 이윤선 김순희

교육전도사 정문영 황서현 김진영 유의숙 조요한 유영필 홍샛별 소 건

원로장로 김광대 최문용 김제덕

시무장로 배길태 신현운 임병진 양영규 김재도 이광수 류연선  
유진상 김선옥 최상범 안완석 임윤오 나종식 전홍배  
이선구 이경옥 오형석 김용철 임헌종 민영기 윤균혁  
오창현 박동영 한상열 박영균 노춘만 김민기 한종욱  
백경순 김용선 이영남 이종환 김철희 이영수 이철성  
김수환 김대웅 장상권 강학신 임영택 황인춘 권영보  
서재광 강현민

협동장로 홍인철 김영손 황헌기 김원배

은퇴장로 김동진 이화춘 김용갑 편우범 윤홍진 변창성 홍준기  
박정도 김광남 김용섭 김광수 박병균 박석이 이기상  
신용선 남극영

찬양지휘 시 온 찬 양 대 명성민 할렐루야찬양대 권중구  
가브리엘찬양대 이현희 호산나찬양대 조요한  
예루살렘찬양대 금교동 임마누엘찬양대 박선규  
두나미스찬양대 강응관 관 현 악 단 안효성 허윤선

피 아 노 최정은 김은주 김봉균 김주희 이지현 이채영 김동민  
권영미 김문정 이선희 박소영 최혜미

오 르 간 정태양 오항민 전옥미 이유경 이지영 정미진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대희애수교  
정 로 회

## 꽃동산교회

F l o w e r g a r d e n C h u r c h

01703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420(상계2동 320-11) TEL | 937-8334~6 FAX | 936-2707 공릉성전 www.flowergarden.or.kr